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5.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2. 27. 강선영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12. 30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

-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(2025.2.18.)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
-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3.11.)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-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(2026.3.13.)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강선영의원)

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 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

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지민)

-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신체검사를 위해 파견된 군의관 등이 실시하는데, 「병역법」 제11조의2에서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동 조항은 현행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에 제10호로 포함되어 있음.

「병역법」 제77조의2의 확인신체검사도 병역처분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와 마찬가지로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, 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7023호)」이 의결될 경우 그 취지를 반영하여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「의료법」의 취지를 고려할 때,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생략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,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 외에도 처음 기재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.

6. 심사결과

대안을 제안하고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